

202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(CRC) 사업 공고

- 문화기술 연구개발(R&D) 기획개발 지원사업(첫걸음지원) 추가모집 공고 -

지역 문화콘텐츠산업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「2022 지역문화산업 연구센터 (Culture Research Center)」 문화기술 연구개발(R&D) 기획 지원사업(B 유형)에 대한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제주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5월

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첫걸음 지원을 통해 도내 문화기술 연구환경 조성 유도
- 4차 혁명 및 급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 시장에서 문화기술 연구개발지원을 통해 제주도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기반 마련
- 제주기반 문화콘텐츠 기업들에게 R&D관련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, 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기회 제공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
 - 문화기술 연구개발(R&D)기획 지원사업: : 2022년 협약일 ~ 2022년 12월(1개년)
- 지원내용
 - 가. 문화기술 연구개발(R&D) 기획 지원사업(B유형)

| | |
|------------|--|
| CRC | 2022년 |
| | 문화 기술 연구개발(R&D) - 기획개발 지원 |
| 지원 목표 | 제주도내 R&D 기획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R&D기획 촉진(첫걸음 지원) |
| 지원 과제 | 3개 과제 |
| 지원금 | 20백만원(과제당) |

○ 지원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본사를 제주 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중소기업
-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‘문화산업’ 분야를 영위하는 상용화기술 및 콘텐츠개발·제작이 가능한 중소기업

○ 지원분야: 문화콘텐츠 기술 관련 분야

- 문화산업의 기획, 창작, 제작, 유통, 서비스, 융복합 등 과 관련된 기술

※ 문화기술(CT)

[참조] 제3차 문화기술(CT) R&D 기본계획(2019)

문화적 요소(예술성·창의성·오락성·여가성·대중성)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*에 기여하는 기법·기술을 의미

* 문화기술은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7조 제4항에 따른 “융합연구개발”(新기술 상호간, 新기술과 학문·문화·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)의 핵심 영역에 해당

2.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
공고기간: 2022. 05. 04.(수) ~ 5. 18.(수)

접수기간: 2022. 05. 16(월) ~ 5. 18(수) 18:00까지 (3일간)

※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, 시간 엄수

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

○ 지정된 양식과 안내서에 따라 작성, PDF로 제출

○ 발송주소: culture@ofjeju.kr (접수 후 1일 이내 접수확인 메일발송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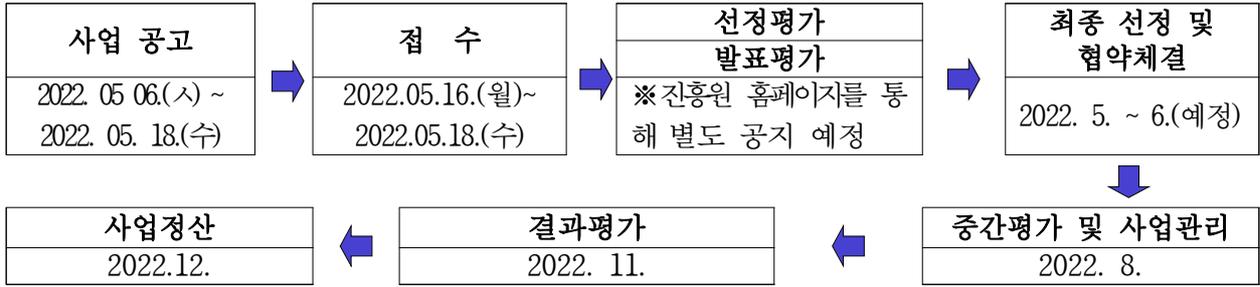
※ 세부접수방법은 사업안내서 참조

※ 해당 추가모집 부분에 지원한 기업은 추가제출을 할 필요는 없으며, 접수기간내 수정(보완)된 과제 기획서 제출도 가능

※ A유형에 지원한 기업이 본 유형에 지원을 원할 경우, A유형 지원 포기 가능

3. 선정절차 및 기준

□ 사업추진일정



4. 지원상세내용

문화기술 연구개발(R&D) 기획개발 지원사업(B유형-첫걸음지원)

□ 사업개요

- 총지원기간: 22. 협약일. ~ 22. 11. 15
- 지원규모: 60,000천원(단년도 지원, 건당 20,000천원)
- 지원과제: 3개과제
- 지원분야: 문화콘텐츠 기술 관련 분야
 - ※ 문화산업의 기획, 창작, 제작, 유통, 서비스, 융복합 등 과 관련된 기술 개발
- 지원내용 : 제주도내 기업이 문화산업관련 첫 연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분야에 대한 기획비용 지원
- 지원조건 : 사업기간내 최종 연구개발계획서 제출
- 지원범위

| 사업비 사용 기준 | 비고 |
|---|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(컨설팅 등) 활용비 ·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관련 자료 구입비(예, 동향조사보고서 등) · 기타 연구개발업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 | |

※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매칭 필수

※ 전문가활용비는 개인/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, 기관에게 지급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경영컨설팅, 연구개발서비스업처럼 관련 종목이 있어야함

※세부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

- 지원형태: 예산편성은 지원범위 사용기준에서 자율적으로 편성
- 선정이후, 향후 A유형(문화기술연구개발지원)에 지원시 가산점 부가

5. 평가

- 평가방법: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 발표평가
- 발표시간: 평가대상 기업당 30분 이내(15분 발표, 15분 질의응답)
- 발표자료: 과제계획서와 일치하는 발표용(PT) 자료
- 발표자: 평가대상 기업의 과제책임자
- 선정기준
 -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
 - 우대가점은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
 - 선정평가항목 및 배점

| 구분 | 평가항목 | 세부 내용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연구계획 (50) |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(25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○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 ○ 연구개발기관 업종과 연계성 |
| |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(25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추진전략·방법의 창의성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○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|
| 연구역량 (20) |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역량(2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,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 인력의 연구역량 ○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|
| 성과활용 (30) |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(30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(실현가능성) ○ 기술적, 경제적, 문화적 기대효과 |

※ 종합평점이 동일 한 경우, 연구계획, 성과활용, 연구역량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

※ 최종 선정된 기업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후순위자 선정
(종합점수 60점이상)

※ 평가방법은 접수상황과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우대가점

| 분야 | 우대사항 | 가점 | 확인방법 (증빙서류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|--|
| 인력, 고용 (최대 2점) | 「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」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| 1점 |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|
| |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| 1점 | 여성기업 확인서 |
| |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| 1점 |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2조 제 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(장애인등록증 확인 필) |
| |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9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| 1점 | 사회적기업 확인서 (예비사회적기업 제외) |
| | 과제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근로자 수가 130% 이상인 중소기업(근로자 수 :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) | 1점 | 월별 근로자 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(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 필요, 기업 제출) |

6. 제출서류

- 제출형식: PDF로 제출(단, 연구개발계획서는 한글(HWP)로 추가제출)
- 문화기술 연구개발(R&D) 기획 개발지원 사업(B유형)

| No | 제출서류 | 유의사항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연구개발계획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인 날인 필요 ○ 파일명: B_01_기업명_연구개발 계획서 ○ 한글(.hwp) 파일로 추가제출 ○ 사업추진기간은 : 22.06.01~22.10.30로 작성 |
| 2 | 개인정보이용동의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○ 파일명: B_02_기업명_개인정보이용동의서 |
| 3 |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직인 날인 필요 ○ 파일명: B_03_기업명_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|
| 4 |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제출 ○ 파일명: B_04_기업명_사업자등록증/법인등기부 등본(각각제출) |
| 5 | 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세.지방세 완납증명서 ○ 파일명: B_05_기업명_완납증명서 |
| 6 |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2년간 재무제표(2020~2021년도) ○ 파일명: B_06_기업명_표준재무제표증명원 ※ 홈텍스에서 발급, 설립3년미만은 제외 |
| 7 | 선택 제출 자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과제관련 주요 참고자료(실적증빙, 보유지적재산권, 업무협약서 등) ○ 파일명: B_07_기업명_선택제출자료 |
| 8 | 우대가점증빙자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파일명: B_08_기업명_우대가점증빙자료 |

7. 공통부분

-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은 지원불가
-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타 지원사업 과제와 동일하거나 일부 중복인 경우 지원 불가
-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정부에 의해 기 지원,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- 지원금은 협약체결 이후 총 연구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지급증권 제출
 - ※ 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기업 부담, 사업비로 집행 불가
-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함(기업부담금 포함)
- 지급방법은 협약체결 후 1차(40%) 지급하고 중간평가 이후 2차(60%) 지원금 지급
-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 진행

- 선정과제는 협약종료일 이후 7일 안에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제출
 - ※ 정산보고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의 검토 후,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, 회계검토비용은 사업비에서 산정 가능
- 향후 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내용변경 및 조기종료 될 수 있음
- 사업종료 이후에도 선정기업은 연구개발성과관련 조사를 위해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 적극적으로 협조
- 사업신청시 공고문과 사업안내서에 따라 서류 제출 필수

8. 기술료 납부

- 기술료의 세부사항은 기술료관련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예정
- 기술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공지

9. 결과물의 활용

-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각 과제별 수행기업에 귀속하며, 단 아래 사항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이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
 -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·오프라인 무료 사용
 - 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주최(관)하는 행사, 홍보 등에 활용
 -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보유 시설운영에 활용
 -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영상물책자 발간 등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
- 최종 결과물에는 제주특별자치도,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실 명기-결과물이라 함은 추후, 사업화시 홍보·마케팅까지도 포함한다.
- 주관(참여)기업은 관련분야 법제도화 및 확산을 위하여 (재)제주영상·문화 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- 본 과제 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며, (재)제주영상·문화 업진흥원 및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

10. 결과물의 소유

- 무형적 성과의 소유 :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, 복수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

과는 공동 소유로 함. 다만,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

- 유형적 성과의 소유 :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자재, 장비, 시작품(試作品)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. 다만 참여기관, 위탁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기자재, 장비 등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협약 내용에 따름 (단, 사업비 편성기준에 한정)

11. 신청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이미 개발된 기술
- 신청마감일 현재 참여기관, 참여기관의 장, 과체책임재가 국가연구개발사업, 제주특별자치도,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단기연체 포함)로 등록된 경우
-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%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(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)
-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의 부도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
-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이 현재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기술료, 정산금,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
- 신청기업의 선 생산·판매·서비스 중인 제품·서비스이거나 동 제품·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
- 신청과제가 신제품·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·서비스의 고도화(계량화·기능 추가 등 포함)가 아닌 단순한 연구과제인 경우

12. 유의사항

-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서류를 수정할 수 없고 반환불가
- 접수 시 공고서상의 제출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, 제출마감일 까지

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. 서류미비로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, 미접수 사유를 신청자에 통보함

-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
- 지원금 조정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, 예산범위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
-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기타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
-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 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(지원사업별 사업안내서 숙지)
-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(일부가능)
- 다음의 경우 협약체결 중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할 수 있음
 - 협약 전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
 -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
 - 자기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(해당사업만)
 -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- 청탁·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- 사업수행 중 관리기관(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)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, 관리기관의 장이 협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
 -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수행기관은 관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
 -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 담당자와 협의해야 함
 - 임금체불금지
 - 선정된 수행기관은 협약 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임금 및 용역비 등 과제수행 제반비용을 체불 금지
 - 최종공고문 및 내용은 사업안내서를 기준으로 하며,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또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기준에 따른다.

13. 문의

- (재)제주 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문화산업팀 김영현 책임연구원
 - ☎ Tel : 064) 735-0628 / ✉ E-mail : culture@ofjeju.kr